

○○초 발전기금 기탁관련 유언무효확인등 청구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서울고등법원
사건번호	2024나○○○○○ [2심]	사건유형	유언무효확인등
원고	○○○외 1명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외 4명
판결선고일	2024. 11. 18. 항소취하	비고	[1심] 2024. 6. 20. 원고패(교육감승)
사건개요	<p>○ 원고는 망인 A의 상속인 중 2인임. 피고 B와 피고 C는 망인의 지인,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인 자임. 피고 인천광역시는 ○○초등학교를 설립.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, 피고 E는 ○○○동 주민센터를 설립.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임.</p> <p>○ 망인은 2021. 1월경 사망하였고, 이 사건 각 피고들에게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유증하거나 처분 후 분할하는 내용의 유언서를 피고 B와 C가 발견하여 원고 ☆☆☆에게 전달함.</p> <p>○ 원고는 유언서가 훼손, 문서 위조로 의심되는 점, 유언서 작성경위,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해야한다는 이유로 망인의 2014. 10. 16.자 유언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유언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.</p>		
1심 주문	<p>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</p> <p>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</p>		
1심 판결요약	<p>○ (유언의 효력에 관한 판단) ① 병행사건에서 유언서 원본에 대한 필적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, ②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서의 봉인이나 간인은 그 효력요건이 아닌 점, ③ 이 사건 유언서 중 '3층'기재가 삭제된 부분에 망인의 자서와 날인이 없기는 하나,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에 영향이 없는 점, ④ 이 사건 유언서 말미의 인영 2개 중 1개는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동일하고, 그와 상이한 인영 1개가 추가로 날인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서에 형식적 하자가 없음.</p> <p>○ (유언의 효력) ① 유언서에 이 사건 등반 내지 망인의 무사 귀환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, ② 망인이 등반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유언서를 폐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한 점에 비추어볼 때 망인이 귀국함으로써 이 사건 유언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.</p> <p>○ (유언의 철회) ① 망인은 2021. 1.경 이전에도 ○○○동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사무소에 의뢰한 적이 있으나 매도하지 않았고, 2021. 1. 19.경 이 사건 매도의뢰를 하면서도 시세와 상당히 차이나는 가격으로 의뢰한 바,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의사가 확정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, ② 망인의 부동산 처분의사가 확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유언서의 내용대로 배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, ③ 2013년경 이후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자녀들과 왕래가 없었고 피고들이 투병 중인</p>		

	<p>망인을 돌본 점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유증의사가 사망하기 전까지도 유지되고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매도의뢰로써 유언을 철회한 것이라 볼 수 없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유언집행자 특정) 이 사건 유언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B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□□동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고, ○○동 부동산에 관한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○ (수증능력)이 사건 유언서의 내용에 의하여 망인은 ○○동 부동산 처분대금 중 2억원을 ○○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지급하고, 남은 처분대금을 ○○○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는 것일 뿐, 망인이 수증능력이 없는 ○○초등학교와 ○○○동 주민센터를 각 수증자로 특정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님. 망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닌바 이 사건 유언서의 기재 내용 자체로 망인의 유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.
<p>결 론</p>	<p>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(항소인)은 항소를 취하함.</p>